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19가합347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김윤석

피고주식회사 A

변론 종결2021. 4. 15.

판결 선고2021. 5. 13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12. 체결된 매매계약을 258,536,0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258,536,0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 2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3)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김도균

판사김서현

판사김승현

별지

1)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C, D, E, F, G, H, I, J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, 2021. 1. 21. F에 대한 소송이, 2021. 1. 22. G, I, J에 대한 소송이, 2021. 1. 23. H에 대한 소송이, 2021. 1. 26. E에 대한 소송이 각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고, 2021. 3. 26. 주식회사 C에 대한 소가, 2021. 4. 13. D에 대한 소가 각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.

2) 사해행위취소 부분의 청구취지와 관련하여, 원고는 2021. 3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12. 체결된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, 가액반환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위 각 부동산의 실제 가치인 258,536,086원의 지급만 구하고 있고, 이 사건 소장이나 2020. 2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도로 위 매매계약의 일부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, 2021. 3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사해행위취소도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위 258,536,086원을 한도로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기로 한다.

3) 2021. 3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원인이다.